

운영규정 개요(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I.기본정보

기관명	늘편한노인전문요양원	지정일자	2015년 08월 19일
소재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오정길 311	전화	043-742-5800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II.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51명
2. 이용자 모집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플랜카드,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III.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시설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용료	①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장기요양등급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④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안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나.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다.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해지	①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p>②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p> <p>③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p> <p>④시설 내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p> <p>⑤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p> <p>⑥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p> <p>⑦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p> <p>⑧의사 처방에 따른 약 복용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p>
<p>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p>	<p>1.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p> <p>①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가.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p> <p>나.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p> <p>②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p> <p>③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 위험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p> <p>④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p> <p>2.감염으로 인한 격리,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p> <p>①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 의료 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③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p> <p>④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p>
<p>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p>	<p>시설의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p> <p>1. 책임과 면책의 범위</p> <p>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p> <p>2. 안전 교육 및 지도</p> <p>① 시설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 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p> <p>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p> <p>③ 입소자가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p> <p>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p> <p>3. 안전 대책</p> <p>①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 등은 시설 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 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p> <p>② 시설물 이용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직원들에 안전교육을 상시로 실시하고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한다.</p>
<p>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p>	<p>1.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p> <p>①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p> <p>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p> <p>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p> <p>2.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p> <p>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p> <p>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p> <p>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p> <p>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p>

IV.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면회실에 비치되어 있음.
---------	---------------